#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5조~40조 (관리감독자의 직무, 사용의 제한 등), 제171조~178조(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), 제187조~190조(화물자동차), 제196조~206조(차량계 건설기계 등), 제385조~386조(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), 제387조~393조(화물취급 작업 등)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, 운반, 실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·전락·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·협착·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, 운반, 신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·전락·접촉·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접촉·협착·추락 등의 재해 방지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  - (가) "덤프트럭"이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(토사, 모래, 자갈등) 운반에 적합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건설기계를 말한다.
  - (나) "화물자동차" 라 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적 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㎡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.

- (다) "적재 중량"이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허용 하중으로 승차 기준인원 및 차량 자체하중을 제외한 적재함의 최대적재량(Ton)을 말한다.
- (라) "신거나 내리는 작업"이란 차량에 화물을 신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으로 로프 걸이 및 풀기와 덮개 덮기 및 벗기기 작업을 포함하여 말한다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의 종류

## 4.1 덤프트럭의 종류

국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은 하대 개방 방식, 구동 방식, 차축수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하대 개방방식에 의한 구분
  - 덤프트럭은 하대 개방방식에 따라 후면과 하면 및 측면 개방식으로 분류한다.
  - (가) 후면개방식(Rear Dump): 적재물을 <그림 1>과 같이 뒷쪽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의 덤프트럭으로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한다.
  - (나) 하면개방식(Bottom Dump): 적재물을 <그림 2>와 같이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구조의 덤프트럭 이다.
  - (다) 측면개방식(Side Dump): 적재물을 <그림 3>과 같이 옆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의 덤프트럭 이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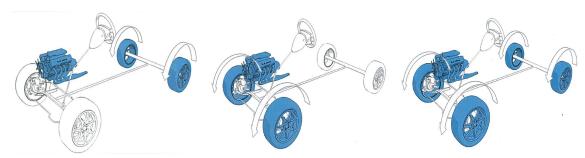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후면개방식 <그림 2> 하면개방식 <그림 3> 측면개방식

#### (2) 구동 방식에 의한 구분

덤프트럭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후륜·전륜·4륜 구동방식으로 분류한다.

- (가) 후륜 구동식(Rear Wheel Drive): 동력이 <그림 4>와 같이 후륜으로 전달되 어 구동되는 방식이다.
- (나) 전륜 구동식(Front Wheel Drive): 동력이 <그림 5>와 같이 전륜으로 전달되 어 구동되는 방식이다.
- (다) 4륜 구동식(Four Wheel Drive): 동력이 <그림 6>과 같이 전륜과 후륜으로 전 달되어 구동되는 방식이다.



<그림 4> 후륜 구동식 〈그림 5> 전륜 구동식 〈그림 6> 4륜 구동식

## (3) 차축수에 의한 구분

덤프트럭은 차축수에 따라 2축, 3축, 다축식으로 분류한다.

- (가) 2축식: 휠(Wheel)을 회전시키는 축대(Axle)가 2개인 <그림 7>과 같은 덤프트 럭을 말한다.
- (나) 3축식: 휠(Wheel)을 회전시키는 축대(Axle)가 3개인 <그림 8>과 같은 덤프트 럭을 말한다.
- (다) 다축식: 휠(Wheel)을 회전시키는 축대(Axle)가 4개 이상인 <그림 9>와 같은 덤프트럭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.



<그림 7> 2축식



<그림 8> 3축식



<그림 9> 다축식

## 4.2 화물자동차의 종류

국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중량, 유형,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최대 적재중량에 따른 분류
  - (가) 소형: 최대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, 총중량이 3.5톤 이하인 <그 림 10>과 같은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  - (나) 중형: 최대 적재중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,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<그림 11>과 같은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  - (다) 대형: 최대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이거나,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<그림 12>와 같은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


## (2) 유형에 따른 분류

- (가) 일반형: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자동차를 말한다.
- (나) 덤프형: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<그림 12>와 같은 화물운송용 자동차를 말한다.
- (다) 밴형: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<그림 13>과 같은 화물운송용인 자동차를 말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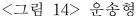
<그림 12> 덤프형

<그림 13> 밴형

- (라) 특수용도형: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 이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 으로서 특정 화물운송용인 자동차를 말한다.
  - ① 운송형: 차량 등의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<그림 14>과 같은 구조의 화물자 동차를 말한다.

② 구난 및 견인형: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 할 수 있는 <그림 15>과 같은 구조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






<그림 15> 구난 및 견인형

- (3) 업종에 따른 분류(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)
  - (가) 영업용(일반, 개별, 용달)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또는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에 따라 면허(등록을 포함한다)를 받거나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
  - (나) 비영업용: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

## 5.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중점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작업의 중점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은 <표. 1>과 같다.

<표. 1> 중점위험요인과 안전대책

재해 유형	위험 요인	안전 대책				
	후진중 후진경보 장치 미작동으로 충돌 위험	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및 유도자 배치				
	운행중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 등 으로 충돌 위험	운행중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금지				
충돌	덤프트럭에서 하역 작업후 적재함이 올 려진 상태에서 주행중 교량이나 지하차 도 구조물에 부딪치는 충돌 위험	덤프트럭 적재함의 하강상태 및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의 하 부 통과시 통과높이 제한 표시 와 도로면의 구배를 확인 후 통과				

협 착	덤프트럭 적재함 하부 점검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적재함의 하강에 의한 협착	덤프트럭 적재함 하부 점검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설치
전도·전락		운전자는 운전석 이탈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 상태 확인 및 바퀴 구름방지 조치(고임목 등) 설치

## 6.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의 안전작업 절차

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작업 절차에 따른 준수사항은 [그림. 16]과 같다.

작업절차	준수사항				
6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	6.1.1 일반 안전사항 6.1.2 작업시 고려사항				
<u> </u>					
	6.2.1 작업 전 준수사항				
6.2 작업 절차별 유해·위험 요인	6.2.2 작업 중 준수사항				
	6.2.3 작업 종료시 준수사항				

[그림. 16] 작업절차에 따른 준수사항

## 6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

## 6.1.1 일반안전사항

- (1) 관리감독자는 화물취급 작업에서 다음의 유해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.
  - (가) 작업방법 및 순서 결정 및 작업의 지휘
  - (나)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 제거
  - (다)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 금지
  - (라)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·무 확인

- (2) 관리감독자는 덤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(도로 주행 작업은 제외 한다)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다음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  - (가)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, 지반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
  - (나) 사용 장비의 종류와 성능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
  - (다)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등
  - (라)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
- (3) 관리감독자는 자동차 등록증 보유와 운전원의 자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덤프 운전원 자격은 1종 대형면허, 화물자동차 운전원 자격은 12톤 미만 차량은 1종 보통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, 12톤 이상 차량은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, 트레일러 운전원은 1종 특수면허, 트레일러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- (5) 관리감독자는 덤프 및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이 출고시와 달리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주된 용도 외의 사용(다른 차량의 견인 행위 등)을 금지하여야 한다.

## 6.1.2 작업시 고려사항

- (1) 덤프 및 화물자동차 작업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·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는「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3호「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선정시 고려사항.
- (가) 작업여건, 작업물량, 적재물의 부피와 중량, 싣거나 내리는 장비의 조합 등을

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- (나) 운반물량, 운반거리, 장비 Cycle Time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(다) 기동력과 제동장치 등의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라) 가동률, 경제성,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(마) 덤프트럭은 안전지주(안전블럭)가 장착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건설현장 내에서는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운전자는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.

## 6.2 작업 절차별 유해 위험 요인

#### 6.2.1 작업 전 준수사항

- (1)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제동 및 조종 장치와 하역 및 유압 장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·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관리감독자는 이동경로와 진·출입로 및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의 지반 부동 침하와 갓길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관리감독자는 신거나 내리는 작업장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,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의 확보 및 화물의 전도 및 작업자가 넘어지 지 않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.
- (5) 관리감독자는 실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의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운전자는 조종장치, 클러치,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및 운전석 안전벨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(7) 운전자는 전조등, 후미등, 안개등, 차폭 등의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운전자는 후사경의 부착 및 후진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등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운전자는 차륜(타이어)의 공기압, 균열, 변형, 파손 등 주행 장치의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운전자는 후방 감시 카메라의 전원 켜짐과 모니터 작동 상태 등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1) 운전자는 유압모터, 실린더, 배관 등에 누유, 손상,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12) 운전자는 적재함 덮개, 발판, 운전석 방호설비 등의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2)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의 전도·전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의 평탄 성 등 지반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한다.

#### 6.2.2 작업 중 준수 사항

- (1) 관리감독자는 주행로와 진·출입로의 안전을 확인하고,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장소에는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관리감독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장소에는 화물이나 장비 등의 접촉으로 근로자가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3) 화물의 적재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할 것
  - (나) 구내운반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- (다) 화물은 해당 차량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의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.
- (4) 차량계 운반기계 등의 이송작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
- (나) 발판은 충분한 길이·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 유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
- (다)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과 강도 및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
- (라) 지정운전자의 성명·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
- (5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6)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
  - (나)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
  - (다)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
  - (라) 로프 풀기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할 것
  - (마) 로프의 체결과 풀기 및 덮개 작업은(씌우기·벗기기) 추락방지 대책 및 로프의 훼손 손상상태를 점검·확인할 것
  - (7)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,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 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8)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- (가) 꼬임이 끊어진 것
- (나)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
- (9)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할 것
  - (나)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
  - (다) 해당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
  - (라)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할 것
  - (마)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은 즉시 교체할 것
- (10)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(11) 운전자는 운전중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할 것
  - (나)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어운전을 할 것
  - (다) 차선변경, 좌·우회전시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것
  - (라)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나, DMB 시청을 금지할 것.
  - (마) 경음기, 와이퍼,전조등, 후미등, 차폭등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.
  - (바) 브레이크 및 조향장치의 이상 유·무,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상태 등을 확인 할 것.
  - (사)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할 것
- (12) 운전자는 운행중 도로교통법 및 다음의 운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신호등 및 경찰 공무원(의무경찰 포함)의 수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
- (나) 도로와 현장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
- (다)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

- (라) 차량 운행 중 따라오는 차량보다 속도가 저속일 경우 우측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 운행 및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 할 것
- (마) 차량은 항상 정비하여 운행 중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
- (바)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여야 하며,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)의 영향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 할 것
- (사) 기타 도로교통법 제 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를 준수할 것
- (13) 운전자는 후진하는 경우 운전석에서 차량의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여야 한다.
- (14) 운전자는 토사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하는 경우 변속레버를 정지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5) 차량의 하부 수리, 점검, 부속장치의 장착 및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.
- (나) 협착재해 방지를 위하여 <그림 17>과 같은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
- (16) 운전자는 주차시에는 <그림 18>과 같이 바퀴구름 방지조치(고임목 등)를 하여 야 한다. 경사지에 정차하는 경우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<그림 17> 안전지주(안전블럭) 사례



<그림 18> 바퀴구름방지(고임목)사례

(17) 운전자는 적재물을 하역하는 경우 싣거나 내리는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, 적재

#### KOSHA GUIDE

C - 114 - 2020

함의 상승과 하역 작업 이전에 적재함 덮개 개방을 금지하여야 한다.

- (18) 운전자는 적재물을 하역한 다음 적재함을 올린 상태 및 적재함 문짝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19) 운전자와 유도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1-8호(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)의 신호방법을 숙지하여 신호하여야 한다.

## 6.2.3 작업 종료 시 준수사항

- (1) 운전자는 차량을 주차 시 주변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차 차량이 불필요한 위험요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(2) 운전자는 경사면을 주차를 피하고, 부득이 경사면에 주차하는 경우 밀림방지 조치(고임목 등)를 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주차한 다음 차량의 엔진의 시동을 정지하고 운전석 이탈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키를 가지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일일점검을 통해 차량의 이상유 · 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부록 1: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자체검사 결과표

부록 2: 덤프트럭 주요 점검사항

# <부록 1>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자체검사 결과표

차량	명		등록번호		주행거리					
연신	4		검사유효 기간		~ .					
최초등록일		<ul><li>변속기종류 □ 자동</li></ul>			 □ 수도					
원동기	형식				1/1011			1 /10		
차대병	헌호			보험	가입여부	-				
불법 <sup>-</sup> 변경 0					운전사면허 적정여부					
주요장치	항 목	해당	부품		검	사	결 과			조치할 사항
	작동상태(공회전)			□ 양호	□ 소음		정비요			
원동기 (엔진)	오일유량 및 누유			□ 적정	□ 부족		누유 [	] 보충요		
	냉각수 누수	냉각쿨러(리	-디에이터)	□ 정상	□ 누수		정비요			
		냉각수량	및 누수	□ 적정	□ 부족		누수 [	] 보충요		
		오일누유		□ 정상	정여부					
변속기	오일유량 및 상태			□ 적정	□ 부족		누유 [	] 보충요		
	작동상태(공회전)			□ 양호	□ 소음		정비요			
조향 및	조향장치 작동 오일 누유			□ 정상	□ 누유		보충요			
타이어	타이어상태 및 공기압 상태			□ 양호	□ 교환		보충요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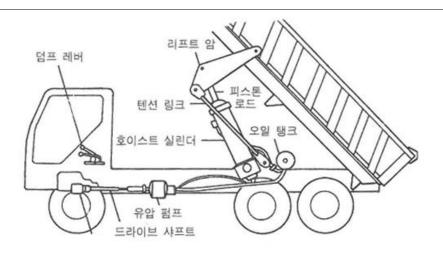
주요	항 목	해당부품		검 사 결 과	조치할 사항		
장치	<u>상지</u>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		□ 적정 □	부족 🗌 교환요			
제동	브레이크 오일 누유			누유 □ 보충요			
안전	경음기	작동상태	 □ 양호 □				
	방향 표시기	작동상태	□ 양호 □				
장치	제동 등	작동상태	□ 양호 □	정비요			
	고장차량 표시기	보관상태	□ 양호 □	정상품 보관요			
적재함 덮게	설치	및 정상작동 여부	□ 양호 □	수리 🗌 교체요			
 전기	와	이퍼 작동상태	□ 양호 □	정비요			
외관부위	의 판금 용	-접 수리 및 교환	수리필요 부	의 및 내용			
특이사항	및 점검지	·의 의견					
점검자	소 속 : 직 책 : 성 명 :	(인)	특이사항				

## <부록 2> 덤프트럭 주요 점검사항





- 점검사항 <주요안전장치>
  - 고임목을 설치하여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차량 밀림을 예방
  - 안전지주(안전블럭)를 설치하여 실린더 이상으로 인한 적재함 하강 방지
  - 후방 경음기(Back Horn) 작동상태 확인



- 점검사항 <주요기계장치>
  - 유압펌프 고정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
  - 유압 계통의 유압호스 피복 상태 및 연결부 누유 여부 확인
  - 유압 실린더 누유 확인 및 피스톤 로드 표면 손상 여부 확인
  - 적재함의 개폐 장치 작동 상태 확인
  -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 상태 확인
  - 차량 등화 장치 확인(전조등, 방향지시등, 비상등, 브레이크 등)